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원이 10인 이내이고,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②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조 (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u> <u>「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u> <u>1. 인원 : 10인 이내일 것</u> <u>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u>	<u>제2조 (출장소의 설치기준 등) ①</u> <u>「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u> <u>1. 인원이 10인 이내이고,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u> <u>2.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신 또는 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u> <u>②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u>	<u>제3조 (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u>

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